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6. 9. 23.>

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SAMPLE
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가능합니다.

신청인 (기업)	① 기업체명 (홈페이지: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		③ 업종(KSIC)	
			④ 주요 생산품	
	⑤ 대표자명		생년월일 / 성별 / 내국인/외국인	
	⑥ 주 소		전화번호	
			팩스번호	
	⑦ 재무 현황(년)	총자산 백만원	자본금 백만원	매출액 백만원
	⑧ 종업원 수(년)	명	⑨ 개업 연월일	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(%)
	⑪ 기업 유형	[ ] 대기업 [ ] 중견기업 [ ] 중기업 [ ] 소기업 [ ] 벤처기업(년 월 일) [ ] 연구원·교원 창업기업 [ ] 기타		

기업부설연구기관	⑫ 기업부설 연구기관명		⑬ 설립 연월일	
	⑭ 기업부설 연구기관장	성명 / 직위	생년월일	근무 형태 [ ]전임 [ ]겸임
	⑮ 소재지		전화번호	
			팩스번호	
	⑯ 신청분야	[ ]지식기반서비스	[ ]과학기술	
	⑰ 연구분야	[ ]위생서비스(산업) [ ]소매 [ ]출판 [ ]소프트웨어개발공급 [ ]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[ ]부가통신 [ ]정보서비스 [ ]광고 [ ]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[ ]건축공학 관련서비스 [ ]기타공학 관련서비스 [ ]기타 사업서비스 [ ]교육기관(산업) [ ]의료 및 보건(산업) [ ]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[ ]문화서비스(기타)	[ ]건설 [ ]금속 [ ]기계 [ ]생명과학 [ ]섬유 [ ]소재 [ ]식품 [ ]전기전자 [ ]화학 [ ]환경 [ ]산업디자인 [ ]기타	
	⑱ 주 연구 내용			
	⑲ 연구개발 인력	연구전담요원 명 / 연구보조원 명 / 연구관리직원 명	⑳ 연구기자재	종
	㉑ 연구공간	[ ] 건물 전체	[ ] 독립공간	[ ] 분리구역
		[ ] 소유 [ ] 임대 건물 ㎡	[ ] 소유 [ ] 임대 ㎡	[ ] 소유 [ ] 임대 ㎡

㉒ 연구개발투자 (년도)	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	백만원
	연구시설비	백만원
	기타	백만원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업대표 (서명 또는 인)

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

첨부 서류	1. 연구개발활동 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 2.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 1부 3.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 1부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.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6.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(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) 1부 7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8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9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(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10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11. 연구원 · 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) 1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신청서 작성방법

1. ③의 "업종"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(KSIC코드)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2. ④의 "주요 생산품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, 서비스를 적습니다(예, 자동차 타이어, 핸드폰, 온라인게임, 조경설계 등).
3. ⑥의 "주소"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
4. ⑦의 "재무 현황"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.
5. ⑧의 "종업원 수"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(일용직은 제외합니다).
6. ⑨의 "개업 연월일"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.
7. ⑩의 "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"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.
8. ⑪의 "기업 유형"란의 구분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.
9. ⑬의 "설립 연월일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.
10. ⑮의 "소재지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
11. ⑯의 "신청분야"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, ③의"업종"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"지식기반서비스"를 선택합니다.
12. ⑰의 "연구분야"란은 ⑯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. 다만, ⑯에서 "지식기반서비스"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.
13. ⑱의 "주 연구 내용"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.
14. ⑲의 "연구개발인력"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.
15. ⑳의 "연구기자재"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.
16. ㉑의 "연구공간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"건물 전체","독립공간","분리구역"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"소유",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"임대"를 선택합니다.
    - 건물 전체: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(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)
    - 독립공간: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
    - 분리구역: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

    ※ 다만,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.
    가.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
    나.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
    다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
17. ㉒의 "연구개발투자"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"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", "연구시설비", "기타"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신청서류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필요 시 현지 확인)	→	결재	→	인정	→	인정서 발급
신청인	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	